

의안번호	2206048
의 퇴 인	조정훈 의원
회 답 일	2025.01.03.
추 계 번호	24C549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0조의3 (대안학교)	(제2항)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예산·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0조의3(대안학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안학교가 예산·결산 및 회계 업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
- 현행법 제60조의3제1항1)은 대안학교에 대하여 법 제30조의4 및 제30조

1) 제60조의3(대안학교)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“대안학교”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, 제23조제2항·제3항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의5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

- 법 제30조의4²⁾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법 제30조의5³⁾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

- 개정안은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,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거나 대안학교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안학교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따른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 비용 또는 신규 시스템 구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에 소요되는 구체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-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대안학교 중 공립 대안학교 전부와 사립 대안학교 일부에서 NEIS(행정/급여)와 K-에듀파인을 사용중

[표] 대안학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현황

설립 구분	학교 수	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현황			
		NEIS (교무/학사)	NEIS (행정)	NEIS (급여)	K-에듀파인 (재정/회계)
공립	23 (100%)	22 (96%)	23 (100%)	23 (100%)	23 (100%)
사립	28 (100%)	24 (86%)	19 (68%)	11 (39%)	16* (57%)
합계	51 (100%)	46 (90%)	42 (82%)	34 (67%)	39 (76%)

자료: 교육부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안학교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이 실시될 수 있고, 이 과정에서 교육정보시

2) 제30조의4(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3) 제30조의5(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)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스텝 사용 학교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

- 다만, 현시점에서 기존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할지 또는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지 여부 및 시스템 개선 또는 개발시 구체적인 기능 사항 등을 예측하기 곤란

-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